

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9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7월 31일

발 의 자 : 최승태 의원

1. 제안이유

-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고, 공직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.
-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휴가 사용의 자율성과 편의성을 확대하고, 현행 제도 운영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및 분할사용 횟수 제한 규정 삭제(안 제27조제9항)

나.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(별표 4)

3. 검토의견

가. 입법 필요성

-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는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,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.
- 최근 일과 삶의 균형(Work-Life Balance) 및 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,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됨.
- 또한 현행 분할사용 횟수 제한은 휴가 사용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, 이를 삭제하여 개인별 근무여건에 맞는 휴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나. 입법 적정성

- 본 개정안은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복무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사항 역시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휴가 확대에 따른 일정 수준의 업무 공백은 발생할 수 있으나, 이는 기관의 복무관리와

업무분장을 통해 충분히 조정 가능한 범위로 보이며,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고려할 때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됨.

다. 법적 타당성

-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은 특별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본 개정안은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인정됨.
- 장기재직휴가 및 경조사휴가 확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지방의회의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 휴가일수 확대에 따라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복무관리와 인력운영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라. 결론

-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근무의욕을 높이는 한편,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.
-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